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61호 2020. 12. 18(금)

선 람	기관의 장

고 시

- 남원시 고시 제2020-192호 남원 도시관리계획(방송통신시설·문화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- 1
- 남원시 고시 제2020-197호 남원 원도심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(2차) 고시 ----- 3

공 고

- 남원시 공고 제2020-2185호 남원시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안) 입법예고 ----- 8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고시 제2020-192호

남원 도시관리계획(방송통신시설·문화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남원 도시관리계획(방송통신시설·문화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방송통신시설 및 문화시설)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, 관련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남 원 시 장

2020년 12월 18일

1. 남원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방송통신시설 및 문화시설) 결정(변경) 조서

가. 방송통신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폐지	1	방송통신시설 (KBS방송국)	향교동 500번지	10,795	감) 10,795	-	전라북도고시 제85호 (86.5.26)	

나. 방송통신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방송통신시설 (KBS방송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방송통신시설 폐지 - 10,795m²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방송국 통폐합으로 인해 기능이 상실된 방송통신시설(KBS 방송국) 부지를 아트센터로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고자 함

다. 문화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4	문화 시설	아트 센터	향교동 500번지	-	증) 10,795	10,795	금회	

나. 방송통신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4	문화시설 (아트센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문화시설 신설 - 10,795m²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방치되어 있는 KBS 문화센터 부지를 아트센터로 조성하여 문화도시, 예총,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창작공간과 시립국악단 연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문화시설로 신설하고자 함

2. 남원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방송통신시설 및 문화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·고시도면 : “실음생략”

남원시 고시 제2020 - 197호

남원 원도심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(2차) 고시

남원 원도심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하여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2월 18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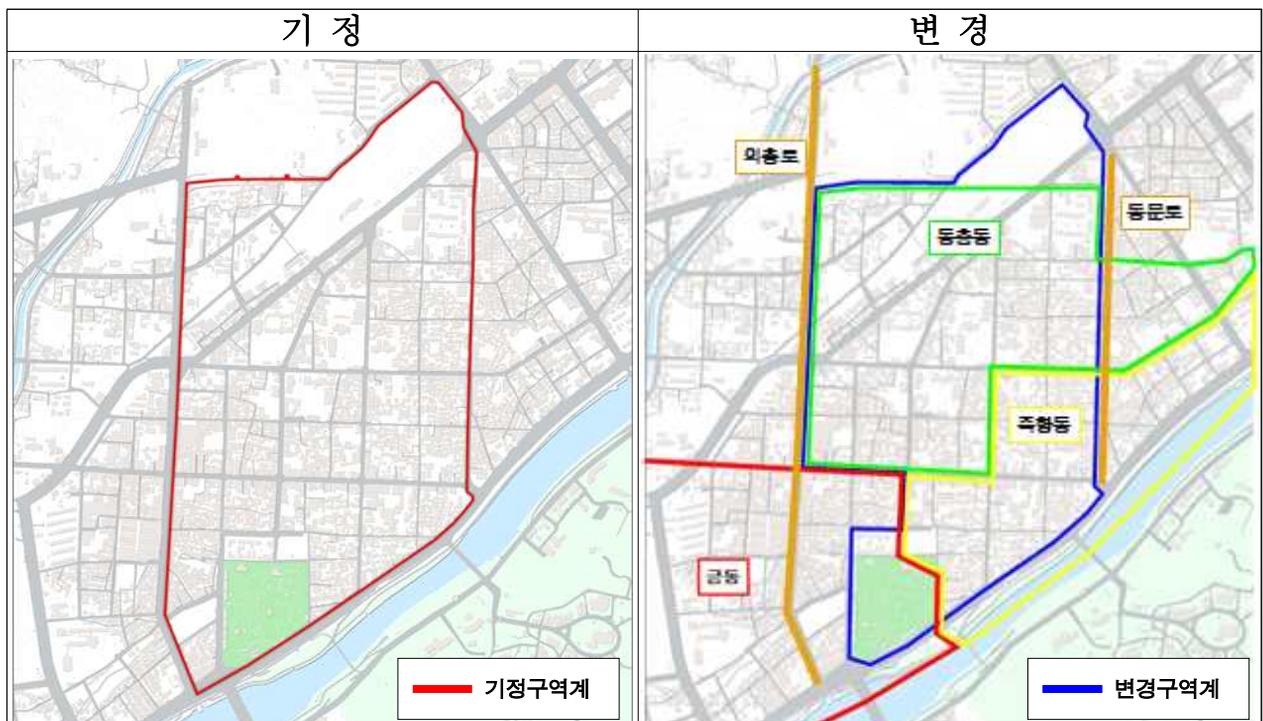
남 원 시 장

Ⅰ 계획의 개요

1.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개요

- 가. 사업명 : 문화·예술로 되살아나는 도시공동체 “죽동愛”
- 나. 활성화지역 : 남원시 동충동, 죽향동, 금동 일원(1,12km²→ 1.02km²)
- 다. 활성화지역 면적
 - 기정 1,121,804m² → 변경 1,019,024m² 감)102,780m²
- 라. 변경사유
 -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(도시재생전략계획 반영), 단위사업 위치·면적 및 사업비 조정, 사업 기간 연장

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도면



② 계획의 세부내용

1. 계획의 비전 및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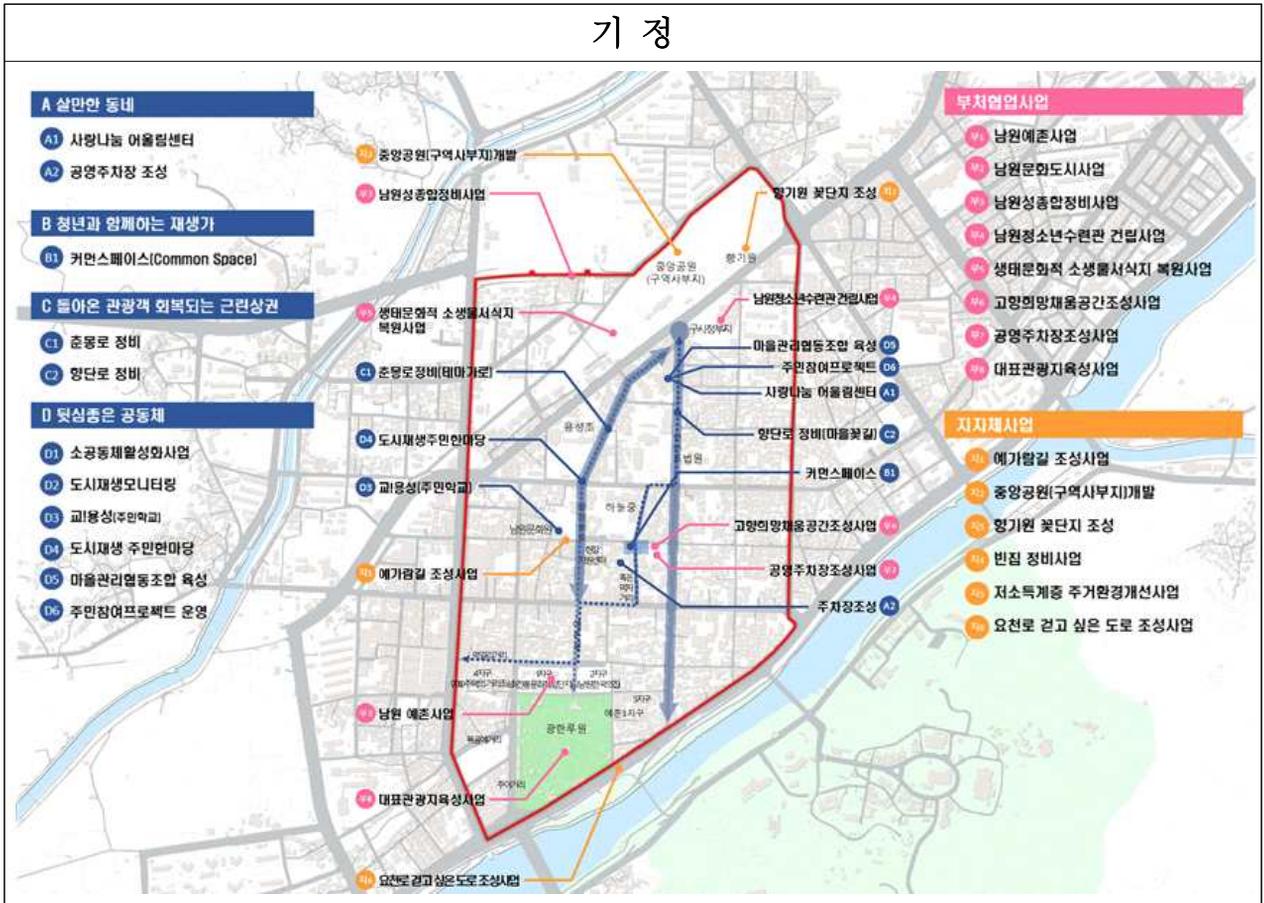
- 가. 계획의 비전 : 예! 루원 교! 용성
- 나. 계획의 목표
 - 살만한 동네
 - 청년과 함께하는 재생길
 - 돌아온 관광객, 회복되는 근린상권
 - 뒤희좋은 공동체

2.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

- 가. 사업기간
 - 기정 : 2016년~2020년 → 변경 : 2016년~2021년
- 나. 사업비 : 1,170.5억원
 - 마중물사업104.2(국비 50, 지방비 50, 자체지방비 4.2)
 - 부처연계 879.4, 지자체 186.9
- 다. 도시재생사업(변경)

구분		최초고시 (①)	기정계획 (②)	변경(안) (③)	증감(비율) (③-②)	누적증감(비율) (③-①)	변경내용	
소계		사업비 100.0	104.22	104.22	-	4.2		
		면적 44,915	28,543	28,842	1.0	-35.8		
1	사랑나눔어울림센터	사업비	22.50	28.77	34.17	18.8	51.9	• (변경) 사업비 증가 사업면적 증가
		면적	6,210	1,961	2,345	19.6	-62.2	
2	주차장조성	사업비	-	3.20	3.20	-	-	• (변경) 사업면적 감소
		면적	-	543	458	-15.7	-	
3	커먼스페이스	사업비	15.70	19.80	16.00	-19.2	1.9	• (변경) 사업비 감소
		면적	3,800	1,439	1,439	-	-62.1	
4	춘몽로 정비	사업비	31.00	31.00	30.60	-1.3	-1.3	• (변경) 사업비 감소
		면적	12,000	12,000	12,000	-	-	
5	향단로 정비	사업비	7.00	12.00	11.00	-8.3	57.1	• (변경) 사업비 감소
		면적	21,000	12,600	12,600	-	-40.0	
6	도시재생주민한마당	사업비	1.80	0.60	0.60	-	-66.7	• (변경) 기간 연장
		면적	-	-	-	-	-	
7	소공동체 활성화	사업비	2.00	2.00	2.00	-	-	• 변경 없음
		면적	-	-	-	-	-	
8	도시재생 모니터링	사업비	2.00	1.20	1.00	-16.7	-50.0	• (변경) 사업비 감소
		면적	-	-	-	-	-	
9	교!용성(주민학교)	사업비	5.00	5.00	5.00	-	-	• (변경) 기간 연장
		면적	-	-	-	-	-	
10	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	사업비	-	0.50	0.50	-	100.0	• (변경) 기간 연장
		면적	-	-	-	-	-	
11	주민참여프로젝트 운영	사업비	-	0.15	0.15	-	100.0	• 변경 없음
		면적	-	-	-	-	-	
12	남원성마을(안길정비)	사업비	3.00	-	-	-	100.0	-
		면적	1,905	-	-	-	100.0	

□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상도





라. 파급효과

- 주민 일자리 창출 및 근린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-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및 정주여건 마련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
-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복지 향상
- 양질의 공공공간 조성 등을 통한 원도심 기능 제고

마.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에 관한 계획

- 공영주차장 조성

바. 행위 제한 적용 지역 : 해당사항 없음

3.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계획 : 변경 없음

4.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: 변경 없음

③ 열람에 관한 사항

- 열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30일간
- 열람장소 : 남원시청 도시과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(☎063-620-647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남원시 공고 제 2185 호

『남원시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16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안)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남원시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환경 친화적인 영·유아 및 어린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남원시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종합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
- 다.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(안 제5조)
- 라.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심의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함 (안 제6조)
- 마.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방법 (안 제7~9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원예산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우)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원예산업과

다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(063-620-6253), FAX(063-620-6745) 및 직접방문 등

4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원예산업과(☎063-620-625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남원시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: 붙임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남원시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의견	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
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0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

남원시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0. 12. .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제안설명자 : 원예산업과장

1. 제정이유

남원시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환경 친화적인 영·유아 및 어린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남원시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종합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
- 다.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(안 제5조)
- 라.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심의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함 (안 제6조)
- 마.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방법 (안 제7~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남원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0. 12. 16. ~ 2021. 1. 5.(20일간)
 - 결 과 :
 - 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 - 3) 예비규제심사 : 해당 없음
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할 사항이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원시 친환경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영·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친환경농어업과 식품산업이 결합된 친환경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남원시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아동을 대상으로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이용하여 생산, 가공, 제조, 조리, 포장, 보관,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.
2. “중간지원조직”이란 행정과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고 이 조례에서 목적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획, 실행, 사후 관리 등의 지원행위를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, 민·관 협력체계를 말한다.
3. “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지원단”이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은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,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,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종합계획 수립) 시장은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육성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
2.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향
3.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과 농업, 기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
4.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사업지원) 시장은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지원단 운영
2.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
3.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제품 연구 및 상품화 개발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심의회 설치) ① 시장은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이라 한다)를 둔다.

1.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
 2.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3. 영·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식품개발·연구 및 상품화 지원 연구·개발 과제 선정 및 평가
 4.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정책 개발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「남원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

조례」 제15조에 따른 남원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.

제7조(중간지원 조직 설치 및 운영) 시장은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의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킹 구축 사업
2.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의 산업화 및 마케팅 사업
3. 영·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식품개발·연구 및 상품화 지원 연구·개발 사업 수행
4.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의 관광 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
5. 사업비를 투자한 농가 및 법인체의 사업수행 감시 및 감독
6. 보조금의 수령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일체 사업
7.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운영·집행 추진
9. 그 밖에 친환경 어린이 식품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8조(조직의 구성 등) ①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운영조직의 구체적인 인력운영·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.

제9조(운영방법 등)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방법,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